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본증명제도의 범위에 아이디어 추가〉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18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철수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0.
3. 회부연월일 : 2026. 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경영상의 정보에 대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경영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원본증명제도의 범위에 아이디어는 여전히 제외되어있음. 그로 인해 기술 분쟁시 증거 활용을 위한 기술임치 활성화 및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기존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임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현행 원본 증명 제도의 대상에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추가하고(안 제9조의2), ②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범위를 영업비밀에서 아이디어로 확대하며(안 제9조의3), ③ 아이디어도 훼손·변경 금지의무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9조의8).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의2(원본 증명) 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아이디어나 영업비밀-----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① -----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

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u>영업비 밀</u>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 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생 략) 2. <u>영업비밀</u>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3.·4. (생 략) ⑤ (생 략) 제9조의8(<u>영업비밀</u> 훼손 등의 금지) 누구 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 한을 넘어 타인의 <u>영업비밀</u>을 훼손·멸 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u>아</u> <u>이디어 및 영업비밀</u>-----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현행과 같음) 2. <u>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u>----- ----- 3.·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8(<u>아이디어 및 영업비밀</u> 훼손 등의 금지) ----- -----<u>아이디어</u> <u>나 영업비밀</u>----- -----.
--	---

원본증명 제도는 영업비밀의 원본 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공동
인증서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시간정보를 보관하여 분쟁 발생시 원
본의 존재 및 보유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참고자료),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다양한 기술자료
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시 개발 시점 및 보유 사실을 입
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전자 지문(hash값) 등을 활용하여 자료의

동일성과 존재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시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아이디어’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 과정에서 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말하는데¹⁾, 예를 들어 서비스 운영 방식, 콘텐츠 제작 시안, 물품 제작 공정, 원가 절감 기술, 마케팅 전략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지난 제20대 국회(2018년 3월)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였고²⁾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³⁾,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12752호)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권리 설정이 불가능한 아이디어의 특성상 부정사용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입증 곤란으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를 배상받기 쉽지 않다⁴⁾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원본증명 제도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아이디어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증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활용예시

- 아이디어 공모전 출품작의 내용이 유출되어 공모자의 동의 없이 사업화된 경우
- 스타트업-대기업의 투자 미팅 후 유사 서비스로 도용된 경우
-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 프리랜서가 외주사와 기능범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료: 지식재산처

기존 원본증명 제도가 주로 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학생·예비창업자 등 모든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으므로 권리화 이전 단계의 국민적 창작활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제3조~제9조)’과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제9조의2~제14조)’는 서로 개념상 명확하게 구

4) 매일일보, “아이디어·기술 탈취 잡음… 피해 입증부터 어려운 스타트업”, 2024.5.16.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868>)

분되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보호 대상인 아이디어를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의 하위 조문인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안 제9조의8과 같이 아이디어의 훼손·멸실·변경 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법 제2조제1호차목⁵⁾ 및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과 중복·모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이디어 훼손·멸실·변경을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또한,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인 아이디어는 명시적으로 권리 범위가 특정된 특허권과 달리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기만 하면 되므로 적용 대상이 넓어 원본증명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증명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정의 규정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식재산처는 기술임치 활성화 및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원본증명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장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다만 현행법상 아이디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본증명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의 범위와 아이디어 훼손·멸실 등의 행위태양을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제18조제3항⁶⁾과의 인용 관계를 고려하여 안 제9조의8의 개정 조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⁷⁾.

문 의 처
02)6788-5458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주: 참고로 개정안은 제9조의8에서 훼손·멸실·변경행위 금지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추가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인 제18조제3항은 별도로 개정하지 않으므로, 안 제9조의8에서 아이디어의 훼손·멸실·변경행위의 금지에 대한 내용은 처벌 규정이 없는 단순한 훈시 규정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임.

참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운영 현황

□ 서비스 개요

-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9조의3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 **(개요)** 원본 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한국전자인증) 시간정보를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원본 존재 및 보유시점 확인**
 - * 원본증명기관은 메타데이터(전자지문 등)만 보관하고 원본파일을 보관하지 않음
- **(운영)** 전자문서의 원본여부 증명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총 4개)을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관리중('19~)

구분	기관명	기업규모(직원수)	비고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공기관(189명)	특허정보원으로부터 원본증명서비스 사업 이전('19)
2	LG CNS	대기업(6,900명)	원본증명기관 지정('25.1)
3	레드윗	중소기업(9명)	
4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중소기업(5명)	

□ 서비스 운영 현황

- **(서비스 제공)** 영업비밀 원본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유료서비스 제공
 - **(신규등록)** 10,000원/건 **(갱신)** 3,000원/년 **(증명서발급)** 30,000원/건
 - **(정액요금)** 중소기업 전용 정액요금 서비스 제공
 - * 100건 등록시 60만원(40%할인), 500건 등록시 250만원(50%할인) 등
 - **(대량이용)** 서비스 대량 이용 계약 시 서비스 할인
 - * 1,000건 등록시 300만원(70%할인) 등 / LG화학, KT, SKT,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등 활용
- **연도별 현황**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건수	20,399	17,069	11,360	12,978	12,684	14,034	11,146